

1. 개정이유

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필요 항목을 설립시 신고한 모든사항에서 주요사항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변경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정비
- 나. 변경신고서 서식 정비(시행규칙 별지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정관 사본 및 조합원 명부(각각 정관 또는 조합원 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사업계획이”를 “정관상 사업의 범위가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.6.24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) ① 영 제7조제2항(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	제6조(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) ① -----제3항-----제4항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영 제7조제2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제3항 ----- -----.
<u>1.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</u>	<u>1. < 삭제 ></u>
<u>< 신설 ></u>	<u>1. 정관 사본 및 조합원 명부(각각 정관 또는 조합원 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</u>
2.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(신고한 사항 중 정관,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) 사본	<현행과 같음>
3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·지출 예산서(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3. ----- ----- ----- -----(정관상 사업의 범위가 -----) -----)
4.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,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	<현행과 같음>

서류(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
5.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(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, 이사장 또는 회장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<u>5. < 삭제 ></u>

[별지]

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5. 6. 24.>

[] 협동조합

[] 협동조합연합회

변경신고서

※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신고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법 인	조합명(연합회명)	전화번호	
	소재지		
	이사장(회장) 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
	주소		
신고내용	변경 항목	변경 내용(간략히)	
	정 관		
	주된 사무소 소재지		
	임원정보		
	출자금 납입총액		
	조합원 수		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사본 및 조합원 명부(각각 정관 또는 조합원 수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	2.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(신고한 사항 중 정관,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) 사본 1부	
	3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(정관상 사업의 범위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	
	4. 대차대조표와 출자금소의 의결,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금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(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	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류확인 및 결재	→	신고확인증 뒤틀기재	→	발급
신고인		처리기관 (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·도지사)		처리기관 (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·도지사)		처리기관 (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·도지사)		처리기관 (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·도지사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